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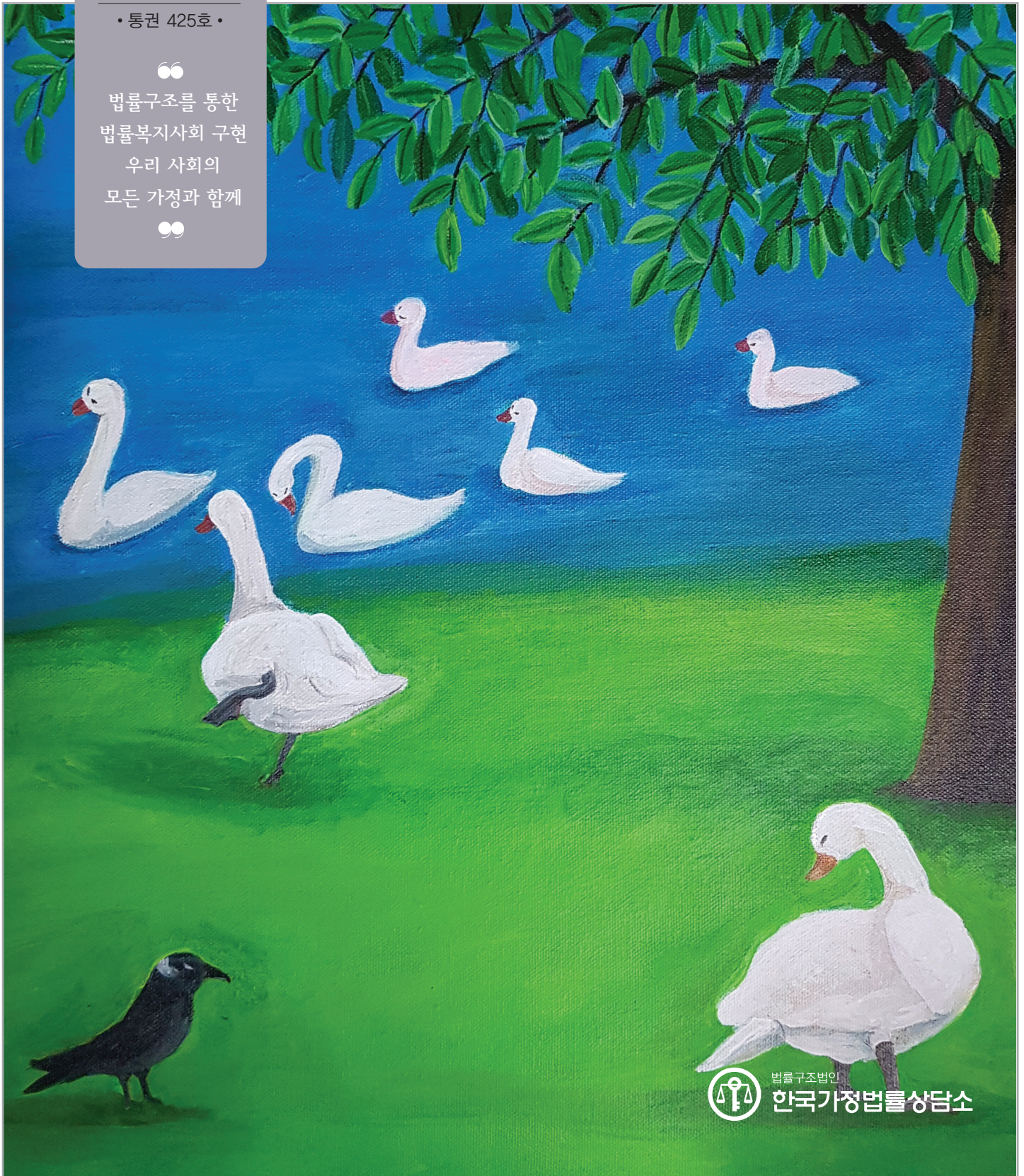
1

2019

• 통권 425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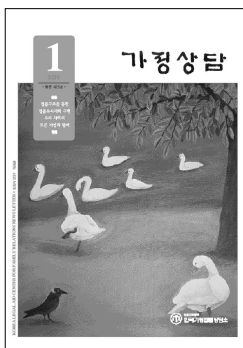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 △ 2018년 12월 17일 20주기를 맞이한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조출한 추모식이 본소 강당에서 열렸으며,
▽ 추모식을 마치고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였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신난 오리〉

4 • 새해 메시지

6 • 특집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2 • 특별기고 |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②

25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⑪

26 • 가정폭력상담실

28 • 인터넷 상담

29 • 좋은 책

한국, 남자

30 • 결혼과 인생(191) 만화일기

2019 새해 _ 장차현실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6 • 백인번호사단 소송구조

새 해 메 시 지



가족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하며 ②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는 남북관계에 일대 전환이 있었던 한 해였으나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희망만을 안겨주지는 못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인내와 신뢰회복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경제도 더 좋아지고 사회 전반의 소통도 원활해져서 우리 가정,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이번 호에서도 지난 해 연말에 이어 이 시대 가족정책의 문제를 짚어 보고 우리 사회 가족정책의 나아갈 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인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1/4을 넘어서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습니다. 일인가구는 2015년 전체 가구의 27.2%였으며,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 혼자 산다'는 삶의 형태가 일상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45년에는 일인가구 비율이 3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인가구는 50세 이상의 중, 장년층이 3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빈곤 독거노인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2045년에는 일인가구 가운데 약 54%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2017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2세, 남성은 32.9세입니다. 특히 여성의 혼인연령은 1990년 이후 계속 높아져서 2015년에 3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연령은 높아지고 혼인율은 낮아지며 출생률 또한 점점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 역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고민 없이 마음 놓고 혼인과 출산을 해도 좋은 사회인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혼인비용, 경제활동과 육아를 함께 하는 데에서 오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모두 개인의 과제로 안겨 버리고 ‘결혼해’, ‘아기 낳아’라고 압박지르거나 출산하면 얼마를 준다는 근시안적 처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하면 의지처가 생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 모두가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만 필연적으로 이어질 빈곤 독거노인의 일인가구 문제 또한 장기적으로 해결될 여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앞을 내다 보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80년대 우리 농촌에서는 혼인하지 못해 비판하여 자살하는 남성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른바 농촌총각자살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 즉 다문화 가정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어느 정도 해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총각의 자살문제는 해결되었다 해도 그들이 이룬 다문화 가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대비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단일민족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자연스러운 현상, 시대의 추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족을

다루는 전문부처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와 관습의 문제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우리는 덜컥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것입니다.

태어난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출생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는 1만8440명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35만7771명) 중 5.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비중이 5%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인데 앞으로 이 비율 또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절반을 훨씬 넘는 초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말 중학생 한 명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고 원인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동아일보 등이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2%가 ‘한국은 이제 단일민족국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라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동의한 이들 만이라도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일인가구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 가정의 모습은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현실을 읽고 보고 올바른 정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가정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사람이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문제를 사회의 근간에 놓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근원인 가정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우리 사회 모든 가정, 가족 구성원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 집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 총결산

1월

- 2일 시무식
- 4일 송도지부 개소
- 9-11일 교육부 교원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12일 전국지부 신년워크숍



- 17-3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 전시회에 본소 사진 및 자료기증
- 23일 제주지부 현장점검/조경애 법률구조2부장
- 25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상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제들' /김병후 원장
-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29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 서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본부 총 상담 7,591 건

2월

- 1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연수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8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일교육(애란원)/ 조은경 · 천다라 상담위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사 현장재조명' 연구착수자문회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9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보현의 집)/ 전규선 상담위원
- 22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의 상처' / 김병후 원장
- 23일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을 위한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혼가족의 재산문제 연구 평가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진영 상담위원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7,350 건

3월

- 8일 정기 전기이사회
여성가족전문상담(과천시여성비전센터)/
조은경 상담위원
- 12일 한-베 함께돌봄센터 김이연심 소장 본소 방문 및
업무협조사항 논의/곽배희 소장
- 13일 2018년 제1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회의 개최 및 참석/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14일 이레상담교육원 가정폭력시설종사자 양성교육
교육생 및 직원 본소 방문
- 16일 황의석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본소 방문 및
법률구조사업 협력논의/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2일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
'고통에 대한 오해와 대안-종교철학적 성찰을
통하여' /정재현 교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감정이란?' /
김병후 원장
- 2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
곽배희 소장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4-25일 제45회 나,너, 그리고 우리-행복찾기 부부캠프/
차연실·박상진·권지연 상담위원



- 27일 2018년도 정기총회
- 30-3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조은경·박상진 상담위원

본부 총 상담 7,060 건

4월

- 2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심포지엄/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형사정책연구원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 본소 방문 및 간담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황현정 변호사
- 6-10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한강시민공원)
- 12일 이투데이와 상담소 사업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보현의 집)/
전규선 상담위원
- 13일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혜영 이사장,
조성은 경영기획실 실장 본소 방문 및 환담/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7일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
/곽배희 소장



- 2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김영정 연구위원과
호주제 폐지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온누리 호스피스 대상 법교육/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 26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인간 뇌의 특성' /
김병후 원장
- 30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7,041건

5월

- 8일 송의여중 학교폭력예방교육/천다라 상담위원
9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
전규선 · 박소연 상담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미정 상담부장 방문해
업무관련 논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0일 베리모먼트 최성희 부사장, 최익한 부장과
본소 페이스북 광고 회의/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1일 창립 6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
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 개최



본부 총 상담 6,553 건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보현의 집)/
전규선 · 유혜경 상담위원

- 21일 임시이사회
가정폭력피해자 강의 및 상담(서울모자의집)/
복미영 상담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3일 한일가족법학회 · 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7일 강동구가정상담센터 가족법교육/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8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사랑, 분노' /김병후 원장

- 29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개최



서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부 총 상담 6,554 건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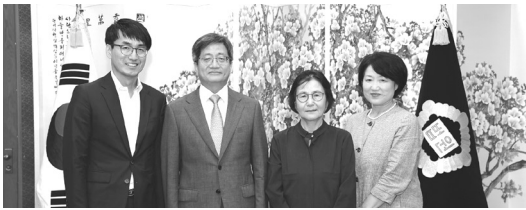
- 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전문가자문위원회 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7일 가정폭력피해여성 역량강화 자조모임 '라오니모임' /
장희숙 교수
11일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곽배희 소장
12일 여성신문사 창간 30주년 기념 호주제 폐지 관련
인터뷰/곽배희 소장

- 4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 김윤경 양육비상담
본부장, 장정인 위탁지원부장과 환담/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5일 유해인도 기획소송 관련 변호인단 회의/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김민선 · 황현정 변호사 및
변호인단(정미화 · 이명숙 · 배인구 · 천정환 변호사)



-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0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법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 11일 이레상담교육원 가정폭력시설종사자 양성교육
교육생 및 직원 본소 방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법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 16일 대법원 방문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부 이재근 차장,
오지현 과장과 업무협업과 관련한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 19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재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1-2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조은경 · 천다라 상담위원



- 25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6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다름과 다양성' /
김병후 원장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서울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부 총 상담 7,579 건

8월

- 25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부 이재근 차장,
오지현 과장과 업무관련 논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이화여대 동창회 주최 노정희 동문 대법관 취임
축하모임/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7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겸 직원재교육



- 2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II' 개강 첫 수업/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보현의 집)/
전규선 · 권지연 상담위원
-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곽배희 소장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7,138 건

9월

- 1일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과천시 양성평등축제한마당)
- 4일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 5일 신용회복 상담 및 교육
(서울시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
- 7일 임시총회
-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곽배희 소장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현원 과장과
최수영 행정사무관 본소 방문 및 의견 나눔/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14일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주제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5일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
- 1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II' 강의/
곽배희 소장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 간담회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최수진·유혜경 상담위원
- 18-1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년 및
2020년 사업심의위원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0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서울권역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7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외도에 대한 대처' /
김병후 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8일 고명경영고 학교폭력예방교육/정다혜 상담위원
- 28-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조은경·박소연·천다라 상담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6,178 건

10월

- 12일 제5회 윤후정 통일포럼/곽배희 소장
2018 입법평가연구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토론발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점동중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김진영 상담위원
- 15일 고명경영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최수진 상담위원
- 17일 대검찰청 구본선 형사부장, 한운경 형사2과장과 환담/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2019년 연구주제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8일 서초주민을 위한 법교육/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5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진선미의원실과 공동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주제 심포지엄 개최



- 27-28일 제46회 나,너, 그리고 우리-행복찾기 부부캠프/
차연실·박상진 상담위원, 최은아 선생
- 29일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및
의료수급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1일 이레상담교육원 가정폭력시설종사자 양성교육
교육생 및 직원 본소 방문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6,804 건

11월

- 1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곽배희 소장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훈 전 교육/
김진영 상담위원
- 2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3일 한국젠더법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현황과 개선주제'에 관한
토론발표/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7일 한국여성상담센터 설립 20주년 축하영상 촬영/
곽배희 소장
- 8일 대검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수사관 워크숍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치 사례 공유 업무협의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15일 정기 후기 이사회
- 16일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치 전문가자문위원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명노연 과장, 노문영 변호사, 정도엽 대리 등과
소송구조지원 업무협의간담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2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분노조절장애' /
김병후 원장
- 26일 상명대학교 학생 대상 가족법교육/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강서지역자활센터 가족법 및 신용회복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28일 2018년도 특강 겸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
'알아두어야 할 조선정치사' /이덕일 소장



- 30일 염광여자메디텍고 학생 대상 가족법교육/
박소현 상담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6,814 건

12월

- 1일 라오니캠프/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 3일 법률구조체험교육(장승중학교)/
조은경 · 천다라 상담위원
- 4일 국회 저출산·고령화 포럼/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복미영 상담위원
- 6일 고령경영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최수진 상담위원
- 13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회의/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 17일 이태영선생님 20주기 추모식
- 18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설명회/박상진 상담위원
-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정책모임/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보현의 집)/
전규선 · 정다혜 상담위원
- 31일 종무식



본부 총 상담 6,450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2)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II.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후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친권상실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 일부 제한(제924조의2) 등의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래에서 이 규정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요건

(1) 친권 상실 및 일시 정지의 요건

제924조¹⁾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 전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친권상실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개정 전에는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각각 독립적인 친권상실의 원인이 되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었으나(물론 이러한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었을 때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개정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친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의 상실(또는 일시 정지) 선고를 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 자녀의 복리침해라는 요건은 당연한 사리(事理)를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개정 전 제924조는 자녀의 복리침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여겨지고 있었다.²⁾).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 본래의 목적인 자녀의 복리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적극적 남용, 예컨

* 지난 8월 27일 개최되었던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김상용 교수 본인이 발표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기고하였다.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 그대로를 2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한다.

1) 이하에서 민법 조문의 경우에는 특별히 범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2)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426면은 “민법상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아동의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친권남용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었을 때 친권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이해된다.

대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아동학대)은 물론, 의도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소극적 남용, 예컨대 방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

1) 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와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로 정리될 수 있는데, ‘자녀의 복리침해’라는 요건은 위에서 본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과 공통되지만, 또 다른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문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과 비교하여 볼 때, 일단 ‘친권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아도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친권 정지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³⁾에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와 관련된 설명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 예로서 “부모가 취학 연령대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녀의 치료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치료행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수혈에 반대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

는데,⁴⁾ 여기서 들고 있는 예는 전부 친권의 남용(소극적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구별되는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기초가 된 논문⁵⁾에서도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가령 치료 거부 등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녀의 치료에 관하여는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그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며, 나머지 자녀의 양육은 여전히 부모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치료 거부도 결국 친권남용으로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 외에 법무부 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친권제한·정지제도 입안보고(「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안보고, 2013. 8.)에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친권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희망하나 수혈동의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친권 제한”이라는 문구가 발견된다.⁶⁾

결국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친권 일부 제한 제도는 주로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의료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거부가 친권의 남용(소극적 남용)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⁷⁾(위의 법무부 보고서는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치료거부의 본질이 친권의 부당한 행사, 즉 친권의 남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결국 친권의 남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를 친

3) 법무부가 2013년 11월 27일 주최한 공청회 자료집.

4) 현소해,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법무부 공청회 자료집, 24면.

5) 윤진수·현소해,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법조』 제62권 제5호(2013. 5.), 73면.

6) 이와 관련된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동일한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수혈동의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7) 김천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민사법학』 제13·14권(1996. 4.), 279면 이하; 김민중,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2009. 12.), 280면; 이민봉,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법조』 제61권 제5호(2012. 5.), 255면.

권의 남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정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친권의 남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면 굳이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즉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와 동일하게 ‘친권의 남용’을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며, 굳이 이와 다르게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또한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를 ‘친권의 남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아도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3) 개정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한 문헌을 보면, “외적·객관적인 상황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친권자의 귀책사유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친권의 적절한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⁹⁾ “객관적으로 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되므로,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¹⁰⁾는 견해 등이 있다.

4) 사건으로는 개정민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친권의 남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면 굳이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친권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를 친권 상실, 일시 정지뿐만 아니라 친권 일부 제

한의 요건으로 함께 규정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또한 문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남용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로운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소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객관적으로 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되므로,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의 예로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장기간의 의식불명, 중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능력의 부족(예컨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으나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¹¹⁾ 이는 결국 개정 전 제924조가 친권상실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적인 친권상실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924조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여, 친권상실의 원인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친권상실의 원인 중에서 현저한 비행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¹²⁾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정된 제924조의 요건(친권의 남용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을 적용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친권자인 부 또는 모

8)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집필자: 권재문), 박영사, 2015, 1140면 이하.

9) 박주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2015. 9.), 141면.

10)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463면.

11) 예를 들어 친권자가 불치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권남용의 개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경우에 친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2)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집필자: 권재문), 박영사, 2015, 1127면;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249면; 박주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2015. 9.), 140면. 이러한 견해는 친권상실의 사유에서 현저한 비행을 삭제한 근거로 부모가 ‘현저한 비행’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비록 현저한 비행을 했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침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 제3자에 대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를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정 전 제924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녀의 복리 침해라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 선고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갈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친권상실의 원인 중에서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 개정 전 제924조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녀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¹³⁾ 예를 들면 친권자의 소재불명, 장

기간의 의식불명, 중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능력의 부족(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으나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결국 위에서 본 개정민법상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¹⁴⁾ 그런데 친권상실의 원인 중에서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한 결과, 이제는 위에서 열거한 사정(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이 있는 경우에도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¹⁵⁾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개정민법 제924조의2가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친권의 일부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조차도 법률의 흠결에 의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¹⁶⁾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개정법의 입법자는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또는 상대적으로 덜 침해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개정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였으므로, ‘현저한 비행’을 친권상실의 요건으로 존치시켰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침해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단지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가능성도 없다. 2011년에 개정된 일본민법은 친권상실 사유에서 현저한 비행을 삭제하였는데, 지난 민법개정 시 현저한 비행을 삭제한 것은 결국 일본민법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친권 제한 정지 도입 개정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2013. 10. 23.)를 보면 일본민법 제834조가 개정민법 제924조의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 사유를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 자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친권자의 비난가능성 내지 친권자의 유책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친권상실 및 일시정지제도는 자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요건을 자의 관점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요건을 “친권을 남용하여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수정하였다. 문언을 축조함에 있어서는 2012. 4. 1.부터 시행된 일본 개정민법 제834조 및 제834조의2를 참조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친권남용”에 대한 고유한 법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민법 중 “친권을 남용”한다는 용어는 그대로 차용하였다.」

13)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428면.

14) 단독친권자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상용, “부모가 장기간 소재 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고찰”, 『중앙법학』 제18집 제4호(2016. 12.) 이와 달리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친권상실선고를 받지 않으면 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7. 9. 26. 2017스561 결정; 원심 대구가정법원 2017. 5. 29. 2016브1037 결정). 그러나 위의 학설에 따르더라도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해서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5) 박주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2015. 9.), 141면.

16) 대구가정법원 2018. 4. 26. 2016노합10057, 2016노합10065 심판은 모에 대하여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건에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구의 상대방인 모에게 민법상 친권상실 사유(친권남용)가 없고, 단지 친권의 제한 사유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집필자: 권재문), 박영사, 2015, 1128면은 “친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의 일시 정지라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친권의 남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친권의 남용에 관한 해석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3) 친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해야 하며,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친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굳이 친권의 전부를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지 않고, 일부만을 제한해도 자녀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아도 친권의 일시 정지 이외에 일부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서 일부 제한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친권남용의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 제한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입법과정에서 일관되게 논의되었던 부모에 의한 치료 거부 사례는, 친권자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함에도 동의권의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친권의 남용(소극적 남용)에 해당하는데(각주 28참조), 이런 경우에는 친권 중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거소지정권 등 친권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친권남용의 경우에는 친권의 전부 상실 또는 정지만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며,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법률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4) 위에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에 대한 하나의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요건을 굳이 나누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정법에 의하면 친권의 상실과 일시 정지의 요건은 동일하고, 일부 제한의 요건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마도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의 요건과 일부 제한의 요건을 나누어 규정한 이유는, 전자의 요건을 후자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의 요건에서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현저히’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음에 반하여,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은 단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민법의 입법자는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가 일부 제한에 비하여 친권에 대한 보다 강한 수준의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권의 전부 상실이 일부 제한보다 친권에 대한 강한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일시 정지는 친권의 전부를 정지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일부 제한은 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시 정지가 더 강한 조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정민법상 친권 일부 제한의 본질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친권의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친권의 일부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권의 일부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개정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은 곧 친권의 일부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친권 전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최장 4년)과 친권의 일부가 상실되는 것(친권 일부 제한의 경우에는 실권회복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 부분의 친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친권 일부를 영구히 상실할 수도 있다) 중에서 어느 쪽이 친권에 대하여 더 강한 개입이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할 때 친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확대하면 사실상 친권의 전부 제한(즉 전부 상실)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¹⁸⁾ 이렇게 본다면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중에서 어느 쪽이 친권에 대한 더 강한 조치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¹⁹⁾ 따라서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가 친권의 일부 제한보다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의 요건으로 묶고, 후자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친권의 상실

17) “가령 치료 거부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녀의 치료에 관하여는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그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며, 나머지 자녀의 양육은 여전히 부모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덜 제한적인 대안(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진수·현소혜,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법조』 제62권 5호(2013. 5.), 73면.

18) 대가정법원 2018. 4. 26. 2016노합10057, 2016노합10065 심판의 주문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는 것으로 친권 중 신상보호에 관한 부분을 전부 제한하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 더구나 제924조로부터 친권 일부의 일시 정지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입장(친권 제한 정지 도입 개정위원회의 입장이다.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공청회 자료집;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제28권

및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요건을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²⁰⁾

둘째, 이와 같이 친권의 상실 및 일시 정지, 일부 제한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된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지난 민법개정에 의해서 삭제된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²¹⁾ 개정민법상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친권의 남용’ 만으로는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건(특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父)가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건에 있어서 그 부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²²⁾ 그러나 부에 의한 자녀의 강간이나 추행이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국가가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친권의 일부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과도하여 친권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친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일단 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한다)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친권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친권의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²³⁾ 이 경우에는 친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²⁴⁾ 친권상실에 관한 법원 실무가 부에 의한 자녀의 강제추행, 강간 등의 사건에 있어서 일관되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해왔던 것도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한다.²⁵⁾ 부모가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가 ‘현저한 비행’ 인가,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개정민법과 같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을

1호(2014. 3.), 38면;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253면)에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가 일부 제한보다 친권에 대한 더 강한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친권 일부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실질적으로 일부 상실)을 비교하면 후자가 친권에 대한 더 강한 개입이기 때문이다.

20) 독일민법 제1666조 제1항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입하기 위한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 또는 재산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부모가 이러한 위험을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친권의 전부 상실, 일부 상실,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66조 제3항).

21) 물론 아동복지법에는 여전히 ‘현저한 비행’과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8조).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규정이 남아 있다고 해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친권상실 사유를 대안 없이 삭제한 것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방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민법에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규정은 민법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나, 적어도 기본법인 민법에서 친권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는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23) 예컨대 친권의 일부인 징계권의 행사로 성적이 떨어진 자녀를 심하게 체벌한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물론 체벌이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는 일단 친권의 행사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친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상정하든 친권의 행사로서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4) 자녀에 대한 추행, 강간 등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최금숙, “아동학대와 친권상실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8권 제1호(2003), 95면)가 있는가 하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집필자: 권재문), 박영사, 2015, 1128면). 반면에 친권의 남용에 대해서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징계권을 남용하여 자녀를 학대하는 것 등이다.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물론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248면), 자녀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자녀를 추행하거나 강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추행, 강간 등 성적 학대를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자녀에 대한 추행이나 강간을 친권의 남용으로 보는 입장은 친권을 자녀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전근대적인 관념이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친권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집필자: 권재문), 박영사, 2015, 1128면은 성적 학대는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개정법이 “현저한 비행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1127면)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결국 ‘성적 학대는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지만, 현저한 비행을 친권상실의 사유에서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는 모순된 결론에 귀착된다. 결과적으로 이 견해에 따르면 성적 학대는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지만, 현저한 비행은 개정민법상 친권상실의 사유가 아니므로,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는 없다.

친권의 남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법률의 흠결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⁶⁾ 지난 민법개정 시 친권 상실의 요건을 축소시킨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의 흠결을 해소하려면 지난 민법개정에 의해서 삭제된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성질

(1)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개념

1) 친권의 일시 정지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친권의 일시 정지 보다는 친권행사의 일시 정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친권행사의 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친권행사의 정지와 개념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²⁷⁾ 다만 친권 정지의 기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한 친권행사의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친권행사의 정지 기간은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민법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를 신고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이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친권 일시 정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은 총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제한이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예컨대 거소지정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친권행사의 정지는 친권의 전부를 정지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친권행사의 제한은 친권의 일부를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5)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도 있다(예컨대 서울가정법원 2015. 7. 20. 2014년합30218 심판 등). 그러나 대부분의 심판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예컨대, 서울가정법원 2014. 5. 26. 2014년합30022 심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친딸인 사건본인들에게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 2013. 2. 4. 2012년합8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2. 10. 8. 2012년합237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1. 6. 21. 2010년합259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0. 4. 20. 2010년합12 심판 등).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가정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에 일관되게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친권상실선고를 해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도 역시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민법 제924조에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삭제된 후 친권상실신고 심판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전과 다르게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한 심판(서울가정법원 2016. 4. 8. 2016년합1028 심판; 수원지방법원 2018. 1. 26. 2016년합26 심판)이 있는가 하면, 친권남용을 근거로 한 심판도 나오기 시작했다(부산가정법원 2016. 4. 26. 2016년합3 심판; 대구가정법원 2017. 8. 4. 2017년단731 심판). 나아가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선고를 한 심판도 발견되는데(부산가정법원 2018. 8. 29. 2017년단4057 심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6. 1. 2017년단761 심판), 이 심판은 부에 의한 추행, 강간이 개정민법 제924조의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법원은 그 동안 오랜 기간 부에 의한 추행, 강간 사건에 대하여는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친권상실선고를 해왔는데, 개정민법이 제924조에서 이 요건들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심판들이 나오고 있다. 제924조에서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한 것은 이와 같이 법원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리한 해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법 제924조에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27) 다만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시 정지에 친권 중 일부의 일시 정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각주 51 참조), 민법상 친권의 일시 정지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정지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정지는 친권 전부의 행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친권의 일부에 한하여 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친권행사의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도 친권행사의 정지 기간과 같다. 즉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한 친권행사의 제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친권행사의 제한 기간은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면, 친권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친권의 행사를 정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에는 친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친권의 일부 제한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와 동일하고 단지 친권이 정지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친권의 일부 제한에도 당연히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친권의 일시 정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제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결과,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친권의 일부가 제한된 부 또는 모가 제한된 부분의 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제926조에 의해서 실권회복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실권(失權)회복의 선고란 법원의 선고로 상실했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고를 말한다. 따라서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권회복의 선고를 통해서만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친권 일부 제한의 본질이 곧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925조에 의하면 친권 중에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925조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 이 부분의 친권을 회복하려면 제926조에 의해서 실권회복의 선고를 받아야만 한다.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실권회복의 선고를 받아야만 그 부분의 친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한 점을 보아도 친권 일부 제한의 본질이 친권의 일부 상실임을 알 수 있다.

3)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아도 친권 일부 제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친권상실 등에 관한 민법개정 기초가 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친권 제한과 관련하여 “친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중략) 가령 치료 거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녀의 치료에 관하여는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그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며, 나머지 자녀의 양육은 여전히 부모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라는 서술이 있다.²⁸⁾ 이 부분의 서술을 보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을 일부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이해된다. 또한 공청회 자료집에서도 친권 일부 제한이 친권의 상실과는 구별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현행법상의 친권상실 제도나 재산관리권·대리권 상실제도는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면적으로 상실시키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실권회복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회복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의 회복 가능성 자체와 회복 시점에 대한 예견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안은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 친권의 일부 제한, 그리고 친권의 일시정지라는 세 가지 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한을 둬으로써 친권 회복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²⁹⁾ 여기서는 친권의 일부 제한에도 기한을 두어서 “친권 회복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한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공청회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개정안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제한)에는 친권 제한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즉 현행 제924조의2와 동일하다). 만약 위 공청회 자료집의 서술과 같이 친권의 일부 제한에 대해서도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그 본질에 있어서 친권의 일부 상실이 아니라 친권의 일부 정지라는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공청회 자료집의 서술과 달리 개정안 제924조의2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친권의 일부 제한

28) 윤진수·현소혜,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2, 73면.

29)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공청회 자료집;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제28권 1호(2014. 3.), 35면.

이 친권의 일부 상실과 구별되는 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친권이 회복되는 제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친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친권의 정지 내에 일부에 대한 정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³⁰⁾ 이러한 서술에 비추어 보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의 일부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설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친권의 일시 정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친권의 일부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와 별도로 친권의 일부를 정지시키는 제도로서 친권의 일부 제한이라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서술에 비추어 보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의 일시 정지와는 구별되는 다른 제도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에 친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의 일시 정지와는 구별되는 다른 제도, 즉 친권의 일부 상실로 귀결될 것이다.

이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나, 친권의 일부 제한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친권행사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권의 일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친권의 일부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국 개정법의 체계와 문언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해석을 시도한 결과, 위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친권의 일부 제한은 그 본질에 있어서 친권의 일부 상실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³¹⁾

(2)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친권행사의 제한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서 친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은 본질적으로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친권행사의 제한과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은 사실상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로 인하여 두 제도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 혼란이 우려되는데, 민법개정 시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을 신설할 때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개념을 설정하였다면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친권의 일부 제한을 친권의 일부 상실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제한이란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권리 자체의 상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소유권의 제한과 상실이 다른 명백하다).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에 의해서 친권의 일부를 상실시킨다는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3)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상 친권의 일시 정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정지와 같이 친권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로 이해하여 그대로 존치시키고, 친권의 일부 제한은 아

30)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공청회 자료집;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제28권 1호(2014. 3.), 38면; 이외에도 친권의 일부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253면 등이 있다. 그런데 제924조로부터 친권의 일부 정지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동조로부터 친권의 일부 상실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제924조는 친권 상실과 친권의 일시 정지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제924조의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이제까지 친권의 상실은 당연히 친권의 전부 상실로 이해되었고, 이 규정으로부터 친권의 일부 상실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부터 친권의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친권 일부의 일시 정지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친권 상실의 경우에는 전부 상실만 가능하고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일부 정지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친권 상실의 경우에도 일부 상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친권 일부 상실과 일부 제한(실질적으로 일부 상실)은 또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31)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과 친권의 일부 제한이 사실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상실과 제한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가족법연구』 제28권 1호(2014. 3.), 38면). 그러나 개정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이 친권의 일부 상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동학대처벌법상의 친권행사의 제한에 맞추어 친권의 일부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도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친권의 일부 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이외에 친권을 일부 상실시킬 필요가 있는 아동학대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효과 면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여러 가지 제도(친권의 전부 상실, 일부 상실, 친권행사의 전부 정지, 친권행사의 제한=일부 정지)를 마련하게 되면 다양한 아동학대사례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친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친권상실신고 등의 청구권자

(1) 청구권자의 범위

민법은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열거하고 있다(제924조, 제924조의2). 개정 전과 차이가 나는 점은 자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청구권자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부터 아동복지법상 친권상실신고의 청구권자로서 규정되어 있었다.³²⁾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상실 신고를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친권상실신고의 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법개정에 의해서 이제 민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상실신고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되었으나,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보

여 왔던 소극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어렵다고 본다.

자녀를 친권상실신고 등의 청구권자로 새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민법개정에 의해서 자녀가 친권상실신고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되기 전에,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이 친권행사의 정지나 제한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실제로 아동이 이러한 청구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³³⁾

입법과정상의 논의에서도 자녀에게 친권상실신고 등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³⁴⁾ 친권상실신고 등의 청구권자로 자녀를 추가한 것은 2011년에 개정된 일본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일본은 2011년 민법개정 시 자녀를 친권상실, 친권정지심판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자녀가 친권상실 또는 정지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2)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방지체계상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하게 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³⁶⁾ 예를 들어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아동의 치료가 필요한데도 친권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법원에 제5호(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제7호(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³⁷⁾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정도라면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2)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33)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친권상실 등에 대한 개정민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행사의 정지 또는 제한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건수: 47건, 변호사 6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1건).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55면.

34) “자에게도 절차개시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UN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한다”는 언급이 있는 정도이다. 친권제한·정지 도입 개정위원회, 3차 회의 자료.

35) 자녀가 친권상실청구를 한 건수: 2015년 0건, 2016년 4건(인용 1건, 취하 3건), 2017년 12건(인용 0건, 각하 7건, 취하 5건). 자녀가 친권정지청구를 한 건수: 2015년 16건(인용 7건, 각하 1건, 취하 8건), 2016년 18건(인용 6건, 각하 2건, 취하 10건), 2017년 15건(인용 1건, 각하 2건, 취하 9건, 기타 3건). 일본최고재판소 자료, 親權制限事件及び児童福祉法28條事件の概況(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36)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제13조의 긴급임시조치, 제14조의 긴급임시조치의 청구,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37)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2호(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면 공적인 아동학대방지체계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⁸⁾ 따라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또는 사법경찰관)이 상황을 판단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또는 임시조치)으로 친권행사의 정지나 제한 등을 청구하게 되므로, 자녀가 스스로 이러한 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예외적으로 공적인 아동학대방지체계가 초기에 개입하지 않아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한 아동이 스스로 친권행사의 정지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학대사태의 경우에도 피해아동이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정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도 아동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정지 등을 청구하기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친권행사의 정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민법상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등의 청구권자로서 자녀보다는 오히려 아동복지시설의 장³⁹⁾ 등 이해관계인을 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청구권자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아동학대방지와 아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 이외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⁴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다).⁴¹⁾ 현행민법상으로도 재판상 파양(제906조 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제932조 제1항) 등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아동의 보호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자녀의 보호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⁴²⁾

2) 현행법상 미성년자녀에게는 어차피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녀의 이름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려면 우선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⁴³⁾ 자녀에게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하고⁴⁴⁾ 심판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

38) 2013년 칠곡과 울주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기 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까지 했던 사건들이다. 다만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아동들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39)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40) 2015년에는 아동이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건이 없고, 2016년에도 2건에 불과하다(친권행사의 정지나 제한을 청구한 사건은 아니고,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건수는 2015년 174건, 2016년 306건에 이른다.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55면;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54면.

41) 같은 취지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338면; 대만민법 제1090조는 사회복지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도 친권정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상당소장도 친권상실, 정지 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일본아동복지법 제33조의7).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은 물론 아동복지법 등의 특별법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부차적인 지위가 인정될 뿐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법원(또는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례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독일민법 제1666조, 독일가사소송법 제24조), 스위스(스위스민법 제311조),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민법 제176조) 등.

42)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남소의 위험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복지시설의 장들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친권자와의 관계에서도 큰 부담이 발생하는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43) 반면에 일본 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続法)은 제한능력자에게도 소송능력을 인정한다(일본가사사건절차법 168조, 118조). 따라서 미성년 자녀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친권상실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자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절차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일본가사사건절차법 23조).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친권상실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민법에서 자녀를 청구권자로 규정해도 법체계상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녀가 단독으로 친권상실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는 자녀를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44) 다만 미성년자녀에 의한 친권상실선고 심판 청구 등은 무효이지만, 추후에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민사소송법 제60조).

다. 그러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실제로 친권 상실 등에 관한 심판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될 이해관계인(특별대리인이 될 사람)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하여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며, 굳이 자녀를 당사자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가능하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친권상실 이외에 친권의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로 '부모의 친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고, 친자관계 회복을 통한 원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⁵⁾ 그런데 자녀를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자녀가 청구인이 되어 부모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와 부모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구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파탄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친권의 일시 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가 선고된 경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친권 일부 제한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하여 친권 중 거소지정권 등이 제한(실질적인 의미에서 상실)된 경우에 친권의 나머지 부분은 친권자가 계속 행사하게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민법에 자녀를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사건에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못된다.⁴⁶⁾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굳이 자녀가 스스로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아동학대방지체계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자녀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을 부여하여 아동의 복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해야만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회의 공적인 아동학대방지시스템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자녀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지나지 않는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민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보다 비중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⁴⁷⁾

IV. 맺음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방지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 부모의 친권과 관련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아동학대행위자 중 약 80%가 부모인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아동명령에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 친권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친권에 관한 민법규정도 개정되어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 민법 규정에는 해석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흠결이 있을

45) 현소해,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법무부 공청회 자료집, 21면 이하.

46) 또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공적인 아동학대방지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현상이 될 것이다.

47)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념이 불확실한 용어가 있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개정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를 친권 상실(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친권의 남용이 없이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전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 외에도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친권의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제924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한다. 친권을 일부 제한시켜야 하는 예로서 일관되게 친권의 소극적 남용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인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 상실(또는 일시정지)의 요건인 ‘친권의 남용’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실질에 있어서 친권의 남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면 굳이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즉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와 동일하게 ‘친권의 남용’을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며, 굳이 이와 다르게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또한 문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는 친권남용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로운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소극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란 객관적으로 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풀이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친권자의 소재불명, 장기간의 의식불명, 중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능력의 부족 등이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선고

는 할 수 없고,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정법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친권 일부 제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제한이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예컨대 거소지정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친권행사의 정지는 친권의 전부를 정지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친권행사의 제한은 친권의 일부를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은 이와 같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때에는 친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친권의 일부 제한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와 동일하고 단지 친권이 정지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친권의 일부 제한에도 당연히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친권의 일부 제한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친권의 일시 정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제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결과,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친권의 일부가 제한된 부 또는 모가 제한된 부분의 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제926조에 의해서 실권회복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실권회복의 선고란 법원의 선고로 상실했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고를 말한다. 따라서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권회복의 선고를 통해서만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친권 일부 제한의 본질이 곧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에 의해서 친권의 일부를 상실시킨다는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친권의 일부 상실’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권리의 제한과 상실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론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법률의 흠결이 존재한다. 또한 개정민법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행사의 정지, 제한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⑪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문제 예방을 위해 여성에게 법률을 가르치다

1977년 6월 '동성동본혼인문제신고센터' 설치

'목요법률강좌' 신설

가정문제 예방을 위해 여성백인회관에서 시작한 첫 사업은 여성에게 법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상담실에서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를 당하는 무수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가족법개정운동의 과정에서 상담위원들이 강사로 나가 가족법상 남녀차별 규정 조항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역설하면서 정기적인 법률강좌를 개설해야겠다는 뜻이 확고해졌다. 그리하여 매월 첫째 목요일마다 법률강좌를 열기로 하여 언론에 보도의뢰를 하고 회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첫 목요법률강좌는 1977년 6월 2일 이태영 소장이 '가족법개정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언론을 통한 홍보만으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청중들이 모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여성, 주부들이었다.

법의 생활화를 표방한 목요법률강좌는 따라서 가족법개정운동과 관련한 시사적인 법률문제를 많이 다루었으며 이론적인 강좌와 더불어 실천적인 행동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예컨대 상담소는 6월 1일 가족법개정운동의 차원에서 '동성동본혼인문제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강좌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7월 7일에 열린 제2회 목요법률강좌는 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의 사례발표와 이소장의 강연으로 이루어진 '동성동본 혼인문

제 사례발표 및 강연회'로 열렸고, 이듬해인 1978년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해였기 때문에 동성동본 혼인 부부들이 한시법인 이 법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초빙하여 신고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제7회 강좌인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및 요령' 제14회 강좌인 '동성동본 혼인신고 마지막 한 달' 등이 그것이었다.

목요법률강좌는 이태영 소장과 상담위원들이 돌아가며 강의를 맡았다. 주로 가족법 가운데 특정주제를 놓고 강사가 관련 법규를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고 사례를 분석해 이해를 도왔으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에 대한 해설도 덧붙였다. 이러한 해설이 끝나면 수강자들의 질문을 받아 의문점을 해결하여 완결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상담소의 법률강좌는 언론에 소개되면서 법의 생활화운동의 일환인 생활법률강좌로 차츰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강좌는 1979년부터 수강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수료증 제도를 도입하여 확실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단기간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한 가정문제 예방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대상도, 원인도 다양한 가정폭력 -

상담 통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방법이 아님을

깨달아 근본적인 해결

사건번호 2017버1***폭행치상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9회 등 총 1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1. 2. ~ 2018. 3. 3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5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2남(4세, 3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7. 6. 사건당일, 말다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위에 넘어뜨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세계 틀어막는 폭행으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행위자 혼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행위자는 2년 전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무서워 자녀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 부부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나 부부의 결혼유지 및 피해자의 상담 참여 의사가 확고하여 부부가 함께 상

담에 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상담기간 중 부부가 실천할 사항을 정하였는데 피해자는 소리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로 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원할 때는 대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 약속은 잘 이행되었다. 이어서 부부는 성격유형검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위자는 부부상담을 통하여 결혼 초기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 힘들었던 점, 피해자가 육아를 전담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비하여 행위자의 대화노력이 향상된 점을 평가하였고, 행위자의 우울감을 인식하게 되어 향후 행위자를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부부가 화목해야 한다는 공통목표를 재인식한 점이 부부 노력의 전인차가 되었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는 10점 만점 척도로 피해자는 상담 이전 3점에서 현재는 8점으로, 행위자는 상담 이전 7점에서 현재는 10점으로 평가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7버5**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6회, 음주문제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부모집단상담 6회,
 피해자1(아들) 전화상담 1회,
 피해자2(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21회

상담기간

2017. 9. 11. ~ 2018. 4. 5.

상담경과

행위자는 2017. 3. 사건당일 밤,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언쟁 중 피해자1이 욕설을 하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치인 피해자2와 아들문제로 대화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2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는 피해자2와의 사이에 피해자1(38세)외에 1녀(36세)가 있다. 딸은 결혼하였고, 피해자1은 미혼으로 체육학원 관장이다. 행위자는 외동아들로 아버지가 6.25때 사망하였는데, 피해자1이 결혼하지 않아 대가 끊길 것을 걱정하면서 피해자1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본 건 발생 시 행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1은 분가하였다.

행위자는 자녀 결혼 등에 대하여 전통적인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문제가 있었다. 이에 먼저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음주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주문제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 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했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정을 잘 조절할 필요성을 깨우쳤으며, 그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피해자1은 분가 후 행위자와 많은 교류가 없어 행위자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피해자2는 상담 후 행위자가 언어폭력 등 폭력을 다시 하지 않았으며 술은 여전히 좋아하지만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사건번호 2016동부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교육강좌 8회, 부모집단 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4. 11. ~ 2018. 4. 11.

상담경과

행위자는 아내와의 사이에 1녀 1남(19세, 18세)이 있다. 행위자는 자녀들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아내가 잘못 교육시킨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건 피해자인 아들은 특별하게 비행은 하지는 않지만 수줍음을 타고 학교에 잘 나가지 않다가 2016년 7월 말경 가출을 하였다. 행위자가 수소문 끝에 피해자를 게임방에서 찾았는데 화가 나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 행위자는 학교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태를 본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로 입건되었고 12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2017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1년 과정 직업교육원에 다니기 위해 교육원 근처 고시원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부딪힐 일이 줄어들어 갈등 촉발가능성이 줄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교육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에게 자퇴를 권하여 교육원을 중도포기하고 집에 와서 지내게 되었다. 이전의 행위자라면 피해자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행위자는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피해자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현 모습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살만하다는 표현으로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당구도 치고, 술도 같이 마시며, 함께 논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피해자와 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표출하며 지내게 되었고, 2017년 연말에는 온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행위자의 아내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잘했는데 피해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행위자가 상담 이후 사고와 태도가 유연해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며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잘 지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Q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미국 국적자인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고,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혼자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피고의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 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참조). 이에 법원은, 미국 국적인 원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국 국적인 피고가 계속 미국에 거주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이고 그의 미국 내 주소가 명백하여 행방불명이라고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면 원고의 주소지인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 등 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그 판결을 하는 나라에 있어야만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혼을 명한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 가정법원 1984. 12. 4.자 84드57 심판). 이에 법원은 부부 A, B 모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B는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A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여 받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이혼 판결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캘리포니아 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위 이혼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외국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

김민선 변호사

좋은 책



“가부장이 될 수 없는 형제여,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치다 신간

을 소개하는 지면의 이러한 표제를 보고 크게 웃었다. 바로 이 책 『한국, 남자』를 소개하는 면이었다. 왜 이렇게 웃기지도 않고 생각해 보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남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어서 아마도 공감의 의미였을 텐데 웃다가도 씁쓸했다.

요즘의 인터넷 세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현장으로 보인다. 젠더가 그렇고 세대 간도 그렇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정도의 불신과 혐오가 만연해있다. 페미와 한남, 급식종과 툭박이 곳곳에서 전투 중이다. 여성들이 의존적이라며 ‘김치녀’라고 욕하다가, ‘Girls do not prince’라고 하자 상종 못할 페미라고 한다.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구입하고 이를 페이스북 북 같은 곳에 인증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계약 연장이 불발된 직장인들이 있고 심지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했다가 남초 사이트의 여신에서 구제불능의 페미로 떨어져 버린 아이들도 보았다. 이 책 『한국, 남자』의 광고가 마음에 안 든다며, 페미가 한 것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페미들 두고 보는 인터넷 서점이 문제라며 그 서점의 회원 탈퇴를 인증하는 것이 잠깐 유행했던 남초 사이트도 본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가장 첨예하고 본격화되는 지점이 군복무인 듯하다. 가장 문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에 대해 조금의 자부심도 심어주지 못하고 오로지 썩으러 갔다 오는 인생 낭비의 시간, 신의 아들이나 장군의 아들들은 가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이나 가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사회적 업보일 텐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란

세상의 극히 부분일 뿐이지만 가끔 흔히들 남초 사이트라고 말하는 곳에서 이른바 ‘개념녀’인 자신의 애인이나 아내는 저런 페미꼴통들과 다르다고 간증하거나 혹 애인이나 아내가 페미들과 같은 내용을 떠들어서 괴롭다는 호소를 볼 때, 진심으로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의 ‘가부장도 될 수 없는 형제’들의 역사를 찬찬히 훑어 본 이 책은 흥미롭고 의미 있다.

나도 놀랐던 부분은 성차별의 가장 뚜렷한 징후인 성비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된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한국의 출생 성비가 이른바 자연 성비에 도달한 시점은 2011년이며, 이러한 성비의 회복이 성차별적인 가치가 완화되어서가 아니라 급격하고 극단적인 저출산과 관련 있고, 자녀의 성별보다 숫자에 더 중요성을 둔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광주 의 공수부대를 통해 ‘군대’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죄 없는 인명을 살상한 말단의 가해자가 된’ 이들이 “한국 사회가 근대 이후 주조하고자 했던 남성성의 어떤 ‘안성’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지적에 전율이 일었다. “한국 사회는 단 한 번도 명령에 의문을 갖는 남자들을 바란 적인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 ‘한국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읽다 다시 보니 제목이 ‘한국, 남자’였다. 두 가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제목을 다시 의식하면서 읽게 되었다.

저자의 결론 부분에 절대 공감하며, 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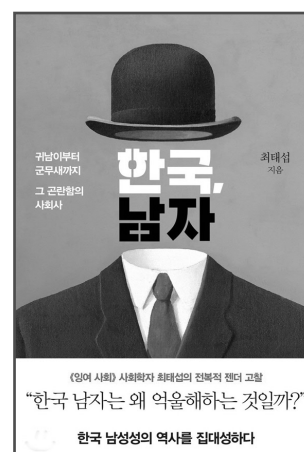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의 주체로, 또 타인과 연대하고 돌보는 자로 살아가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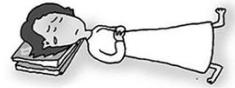
이 숙 현 편집부장

한국, 남자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

최태섭 지음
은행나무, 2018





2019 새 해



우리 진정한 삶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 상처받고 사람에 의해 치유 받는 시간들이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의 가치를 깨달은 나는 새해가 오는 게 두렵지 않다.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전 직원이 함께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가졌고, 2019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가지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종무식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시무식에서는 '각별히 새해 더욱 치열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직원들 개인과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하였다.



이태영 선생님 20주기 맞아 추모식 후 국립현충원 참배

2018년 12월 17일 20주기를 맞이한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조출한 추모식이 본소 강당에서 열렸다. 본소 임직원들과 전 직원, 자원봉사자, 지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추모식은 개회와 국민의례에 이어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씀, 이태영 선생님 약력보고, 추모시 낭송, 이태영 선생님 영상 함께 보기, 차명희 이사장과 한수자 고문의 추모의 말씀 그리고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추모식 후 차명희 이사장, 광배희 소장 등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였다.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라오니 캠프' 개최

본소에서는 2004년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라오니 모임'을 신설하여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월레모임에서 확장한 캠프 일정을 추가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심리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오니 모임'은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힘들었던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 평등한 부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12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상담소에 모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18명에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본소 소개 및 라오니 캠프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어서 우애령 박사의 '내가 바라는 결혼, 배우자가 바라는 결혼'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있었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want),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could), 그리고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should), 이 세 가지 꼭짓점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관람하였다. 문화체험을 통해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과거의 잘못된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한 현실의 행복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의 기억,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기억이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가회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캠프를 통해 행복의 의미와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경험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소에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을 월 2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승중학교, 본소에서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장승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145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활동’에 대한 영상 시청과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알기 쉬운 형사재판’에 대해 백국현 법무관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성폭력을 주제로 장승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학생들 눈높이로 각색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법상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다. 친구들이 직접 연기하는 형사재판을 관람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와 형사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교육 후기가 있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12월 27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외도에 대한 대처’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외도가 발생하는 이유, 신체적·정서적 외도와 사례,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사가 외도를 겪고 있는 실제 부부의 갈등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어 참가자들은 이해와 공감이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2019년 1월 24일(목) “상담 초기에 조정되기 쉬운 갈등의 예”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관련 가정위탁 법률·정책개선 회의 참석

12월 13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가정위탁 법률·정책개선회의에 최수진 상담위원과 김민선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본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탁아동에 대한 입양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 법률구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탁아동의 입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다양한 법률지원의 확대 방안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의 향후 발전방향 및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상담 및 법교육

- 12.6. 학교폭력예방교육-고명경영고 교사대상
- 최수진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4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출생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을 중심으로’ 포럼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협의회 송년모임에 참석하였고,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포럼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제와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수자 고문, 구리지부- 이태영 선생님 추모 기부

지난 2018년 12월 17일 본소 강당에서 열린 이태영 선생님 20주기 추모식에 즈음하여 본소 한수자 고문이 일백만원, 구리지부가 십만원을 특별 기부하였다.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2월 3일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20일에는 본소에서 광고대행사 베리모먼트 최성희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상담소 라디오 홍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26일에는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3일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2018년 12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450				
법률상담 (5,923)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순회
1,004	4,665	118	1	135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99		101	27	

*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 67,82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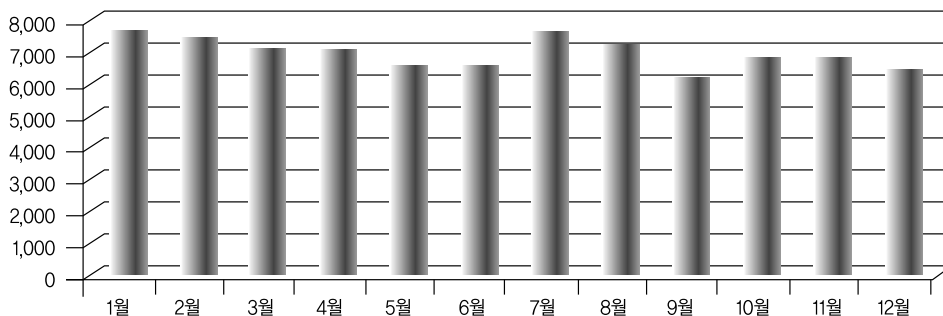
2018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450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923건(91.8%), 화해조정 399건(6.2%), 소장 등 서류작성 101건(1.6%), 소송구조 27건(0.4%)이었다.

법률상담 5,92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1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4%→2.6%), 이혼(18.5%→20.3%), 양육비(7.5%→8.8%), 면접교섭권(3.0%→3.2%), 인지(1.3%→1.6%), 친생자존부(2.7%→2.8%), 부양(1.4%→1.8%), 유언·상속(7.9%→8.2%), 가족관계등록부(3.7%→3.8%), 친양자(0.6%→

0.9%), 성변경(1.1%→1.2%), 성년후견(3.2%→3.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9%→4.4%), 개인회생(0.4%→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4%→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92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04건(16.9%), 전화상담 4,665건(78.8%), 인터넷상담 118건(2.0%), 서신상담 1건(0.0%), 순회상담 135건(2.3%)이었다.



2018년
월별
총 건수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유문숙,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종협, 경수현, 김지후, 김태주, 문동주, 박소영, 박수열, 손태홍, 신수경, 안서연, 윤윤희, 이효재, 조진형, 주소희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심미숙, 장주용,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경민, 김아경, 김준성, 김채린, 남서연, 박소연, 박정현, 박채니, 반민지, 백다슬, 이다경, 전해진, 최이슬, 한 솔, 허호재, 맹형규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12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협의이혼 대상자 자녀 양육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12월 4일, 11일,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0일 구리역 광장에서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김효경, 정수경, 황은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12월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모양육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군산지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이혼관련 출장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40건, 가사조정 3회를 실시하였다. 이혼 전 · 후 가족관계회복사업으로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초담 62건, 재담 88건)과 부모교육(총 4회, 24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이승익, 박태영, 이서준, 허노목, 조은희, 박경환, 이성관, 장준범, 엄요한, 권중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7회,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5회, 광주시법원 2회를 실시하였다. 이혜민, 임상준, 임재훈, 정수경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12월 10일 인천연수경찰서 사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최민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송지영, 황미옥, 문나연, 장미애, 구민혜, 한두환, 전태우, 최효재, 정원진, 한승일, 이윤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12월 4일, 11일, 18일(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12월 13일 전주지부 3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3일 LH 전주 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진, 임지연, 장충석, 조근원, 진현덕,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한지영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12월 5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17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 사례연구회의에 참석하였다. 전철우, 강은실, 홍강오, 백경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실시하였다.

복미영 상담위원

2018년 11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64	63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469	55	414		
군산 (063) 442-1560	136	66	68	2	
대구 (053) 745-4501	652	551	101		
대전 (042) 520-5258	201	199		2	
동해 (033) 535-0188	141	140			1
목포 (061) 273-2514	136	136			
부천 (032) 667-2314	471	265	206		
성남 (031) 707-6661	398	323	70	5	
송도 (032) 834-1369	188	65	116	5	2
수원 (031) 243-4600	409	342	65	2	
순천 (061) 753-9910	169	165	4		
인동 (054) 856-4200	93	73	20		
울산 (052) 246-9568	148	141	1	6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255	253			2
인천 (032) 865-1120	392	191	196	5	
전주 (063) 244-2930	229	229			
정읍 (063) 535-3705	183	182		1	
제천 (043) 644-5690	108	108			
충구 (02) 2238-6554	324	324			
진주 (055) 746-7975	111	75	33		3
창원·마산 (055) 261-0280	307	267	40		
청주 (043) 257-0088	244	112	122	10	
춘천 (033) 257-4688	328	328			
태백 (033) 554-4004	122	122			
평택·안성 (031) 611-4251	207	184	20	3	
포항 (054) 283-7555	69	63	5		1
지부총상담	6,554	5,022	1,481	42	9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가정경제를 파탄내고도 외도를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한 피고에 대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법률구조 2017-429

담당 : 김영은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59세)는 2000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형부와 당숙에게 각 1억 4천만 원과 4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는 등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혀왔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가정에 불성실하여 내연녀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원고에게 당당하게 굴었다. 이로 인해 별거 중이던 2015년 10월경 늦은 밤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가전제품과 집기 등을 부수고 집 앞에 세워둔 원고 소유 차량 앞유리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다음날에 또 찾아와 남은 집기를 부수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또다시 차를 부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아울러 진행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수원지방법원 2018. 7.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 7.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월 500,000원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양육자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면접 교섭시 주의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중증장애 부모에게서 장애아로 태어나
부모 모르게 시설에 맡겨져
이중등록부를 갖게 된 자녀의 등록부 정정**



법률구조 2018-86

담당 : 임경표 변호사

사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내용 : 중증 장애를 가진 청구인(여, 50세)

은 같은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2002년 사건본인(여, 15세)을 출산하였다. 안타깝게도 사건본인 또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사건본인을 친자로 출생신고 후 고모부에게 양육을 맡기게 되었다. 사건본인이 잘 지내는 줄 알았으나, 고모부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건본인이 시설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려오기 위해 시설에 찾아갔고 그곳

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18. 8. 28.)

1. 본적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주 ○○○의 제적부(2004. 4. 2. 기아발견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성본 창설허가로 2004. 4. 19. 편제)는 이중 제적부이므로 이를 전부 말소하고,

2. 위 말소된 제적부를 기초로 편제된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구 □□로 000 사건본인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므로 이를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다.

칼을 휘둘러 자상과 골절을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법률구조 2018-130

담당 : 김남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내용 : 원고(여, 19세)와 피고(남, 23세)는 2017년 3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가 아이를 돌보는 사이 시아버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본 피고가 원고를 질책했고 이 일로 부부싸움을 크게 한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원고는 친정에 간 다음날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다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갔다. 그 와중에 피고가 노래방으로 찾아와 칼을 휘둘러 원고에게 세 군데의 자상과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원고는 출소 이후 피고가 또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움에 떨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원은 2019.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

은 2019. 12. 31.까지 지급하며,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는 피고의 형기 종료일까지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의 형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피고로 지정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에 소홀했던 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법률구조 2018-136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내용 : 청구인(여, 32세)은 상대방(남, 34세)과 2005년에 결혼하여 사건본인들(여 12세, 9세)을 두었으나 2012년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2016년 2월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은 2017년 3월부터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과거의 양육비 지급, 장래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것을 심판 청구하였고, 월 85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는 청구인을 보면서 저의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18. 10. 22.)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2018.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사건본

인 1인당 425,000원씩을 매월 25일 사건본인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청구인과 협의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윤원섭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65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9세)은 1995년경 의류사업을 시작한 친모를 도우며 장사를 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의 봄, 여름, 가을은 장사가 잘 되어 많은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겨울영업에서 손해를 보았다. 그 해 겨울에는 턱다운 점퍼와 구스다운 점퍼가 유행하였는데, 신청인과 친모는 스웨터를 대량 생산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이었다. 신청인은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준비한 사업이었으나 유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실패를 겪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경 IMF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경영난은 극심해졌고, 결국 친모가 발행했던 가계 수표가 부도나면서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다. 이후 채권자들은 친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친모는 구치소에 들어갔다.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신청인을 고용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에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다가 고혈압이 발병하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1.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원고 소생 전혼자녀들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가한 피고에 대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법률구조 2018-199

담당 : 성정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내용 : 원고와 피고는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2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5세, 여 12세)을 두었다. 원고가 피고와 재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2004년, 원고의 전혼자녀인 두 딸(당시 각 7세, 5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는 이때부터 2010년까지 약 6년 동안 13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의 전혼자녀를 강간하고 성추행하였다. 피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1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사건 후 원고와 자녀들은 충격과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화해권고(대전가정법원 2018. 8.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월 14일, 1월 28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교원직무연수

가족법·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
- ▶ 연수기간 : 2019년 1월 8일(화) ~ 10일(목)
- ▶ 연수기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40명(선착순 모집)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신고 / 혼인신고 / 등록부 정정 등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연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담사례연구

임대차 및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1월 24일(목)	1. 상담 초기에 조정되기 쉬운 갈등의 예
2월 28일(목)	2.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관계의 기술
3월 28일(목)	3.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
4월 25일(목)	4.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5월 23일(목)	5.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
6월 27일(목)	6.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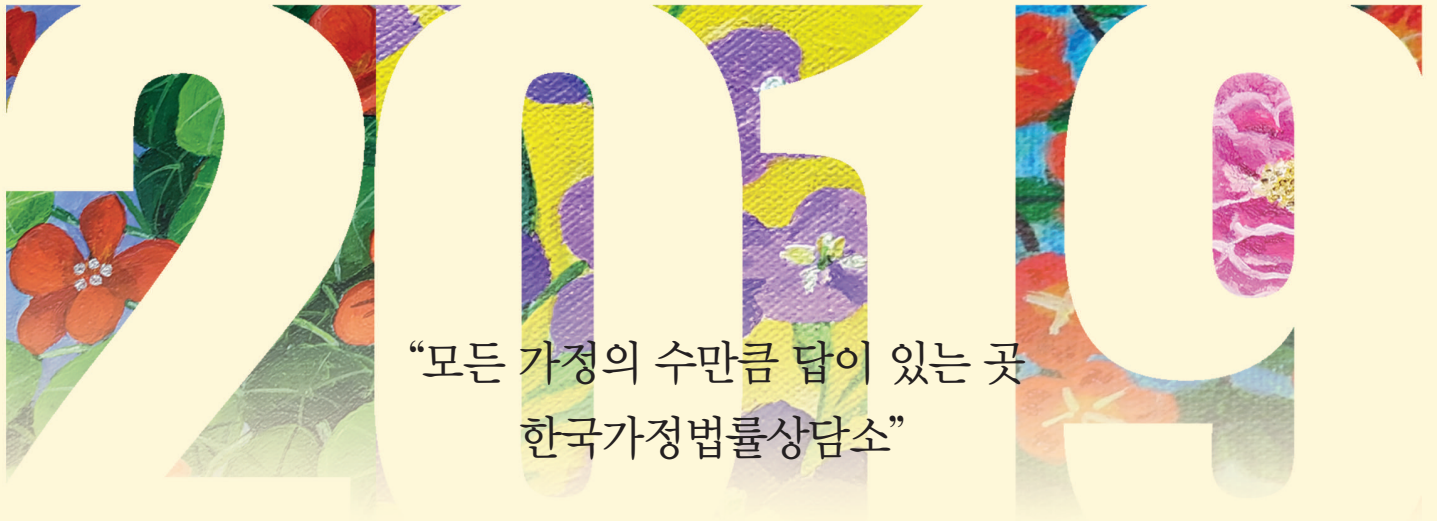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2월 시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2월 14일	분노 :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3월 14일	친밀감 :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생기는 기쁨을 찾고 싶다	
4월 11일	불안 : 편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매일 만나는 내 속 경보기가 있다	
5월 9일	출가본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영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총명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희망과 염원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따뜻한 봄이 오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정과 더불어 성장하며
아픔이 있는 가정을 어루만지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복리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바쳐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63주년의 해를 맞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소가 이렇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격려와 신뢰로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덕분이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자 하는
상담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2019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